<부산지방우정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 기준>

(2025. 6.)

구분	순번	비공개 대상정보 목록	사유(법령)	소관부서
1호		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		
1호	1-1	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	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※ 관련 호수 : 6호	전부서
1호	1-2	직무 발명의 내용(※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)	발명진흥법 제19조	전부서
1호	1-3	민간투자관련 제안서의 세부사항(※ 제안내용 공고 전까지)	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5항	전부서
1호	1-4	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	통계법 제33조	전부서
1호	1-5	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우편에 관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	우편법 제3조	우편영업과 우편물류과
1호	1-6	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	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	운영지원과
1호	1-7	병역사항(변동)신고서	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	인력계획과
1호	1-8	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	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	인력계획과
1호	1-9	징계위원회의 회의자료, 참여한(할) 위원 명단	공무원 징계령 제20조	인력계획과
1호	1-10	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 내용(제안자의 비공개 요구 시에 한정)	국민제안규정 제7조	인력계획과
1호	1-11	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	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※ 관련 호수 : 6호	운영지원과
1호	1-12	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, 금융거래자료	공직자윤리법 제10조, 제14조, 제14조의3	감사관
1호	1-13	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	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	감사관
1호	1-14	법인, 기업,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 및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(예금, 가계수표, 채권관리, 압류소송 등 금융거래 내용)	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	예금영업과 보험영업과

<부산지방우정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 기준>

(2025. 6.)

구분	순번	비공개 대상정보 목록	사유(법령)	소관부서
1호	1-15	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	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4항	예금영업과
1호	1-16	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거래 내역	외국환거래법 제22조	예금영업과
1호	1-17	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(※ 단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공개)	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	우편영업과
1호	1-18	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·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(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, 예규, 훈령, 지시 등 비법규사항 제외)		전부서
2호		**국가안전보장 · 국방 · 통일 ·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**		
2호	2-1	을지연습 및 충무계획(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 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, 참가기관명, 사건·실시계획) ※ 단순한 전달사항, 참가기관 통계, 사건계획 작성 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	을지연습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적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	운영지원과
2호	2-2	을지연습 및 충무계획(사건메시지, 처리결과, 상황보고, 강평회 보고서)	을지연습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훈련의 내용과 전말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	운영지원과
2호	2-3	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(보호구역) 정보	공개될 경우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※ 관련 호수: 1호(보안업무규정)	운영지원과
2호	2-4	청사관리(청사 입체도면, 청사 도면(단면도) 중 보안시설(전기 기계실, 상황실 등) 부분, 경비 초소 위치,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, 경비 및 순찰일지, 경비시스템 및 CCTV의 위치, 장비명, 사진) ※ 경비업무 담당자 명단 등 청사 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	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※ 관련 호수 : 3호	우정계획과 운영지원과
2호	2-5	공공기관 당직명령부	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※ 관련 호수 : 3호	운영지원과
2호	2-6	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(테러진압 절차, 인적자원, 장비 동원 세부계획)	공개될 경우 테러 행위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	운영지원과

<부산지방우정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 기준>

(2025. 6.)

구분	순번	비공개 대상정보 목록	사유(법령)	소관부서
2호	2-7	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(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,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 일정, 참가자, 목표, 결과에 대한 정보,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,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) ※ 위기대응 매뉴얼, 위기·재난 시 행동요령 등이 국민공표용으로 제작된 경우는 공개	공개될 경우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	운영지원과
2호	2-8	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관리(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, 대피시설 구조도,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,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) ※ 직장 내 민방위·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 내용을 파악 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	공개될 경우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	운영지원과
2호	2-9	비밀기록물 관리(비취인가자 성명, 암호자재)	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	전부서
2호	2-10	비밀기록물 비밀분류 사유	공개될 경우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	전부서
2호	2-11	전시대비(전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,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, 전시인력동원계획, 전시 소방대책)	공개될 경우 전시의 국정 운영 상황 등을 알 수 있음	운영지원과
2호	2-12	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(통신망 경로(IP 대역)), 시스템 보안 솔루션,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,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,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,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,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, 시스템 로그파일)	공개될 경우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, 도청 등에 이용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	운영지원과
2호	2-13	귀빈참석 행사(대통령, 국무위원,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의 시간, 장소, 이동경로 및 동선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이나 숙소 정보) ※ 행사 종료 후 공개가능 여부 재검토	공개될 경우 대통령, 국무위원, 해외 주요인사 등 귀빈의 거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음	운영지원과
3호		**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·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**		
3호	3-1	위법·부정행위 등의 신고자, 통보자 인적사항	공개될 경우 신고자 및 통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※ 관련 호수 : 6호	감사관
3호	3-2	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 식별정보	공개될 경우 참고인 및 피의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※ 관련 호수 : 6호	감사관
3호	3-3	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	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음	전부서

<부산지방우정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 기준>

(2025. 6.)

구분	순번	비공개 대상정보 목록	사유(법령)	소관부서
3호	3-4	특정 지번의 매매가	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음	우정계획과 회계정보과
4호		**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**		
4호	4-1	소장, 청구서, 답변서,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, 소송 대응방침, 증거자료, 준비서면, 법률자문 결과, 사실조회 결과, 조서	공개할 경우 진행 중인 재판,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※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정보 공개 여부를 재검토	전부서
4호	4-2	보험사기조사 진행 중인 정보	공개할 경우 범죄의 예방, 수사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※ 관련호수 : 제6호	보험영업과
4호	4-3	금융사고 예방(상시감사 등)과 관련한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(금융사고 예방 대책 및 세부활동, 상시감사 업무 등)	공개될 경우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	예금영업과
4호	4-4	금융사기(대포통장 등) 방지 관련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 (취약점 보고, 구체적인 사례, 아직 시행되지 않은 방지대책 등)	공개될 경우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	예금영업과
5호		**감사 · 감독 · 검사 · 시험 · 규제 · 입찰계약 · 기술개발 · 인사관리 ·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·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**		
5호	5-1	감사(불시감사계획)	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 ※ 감사 종료 후 공개, 감사 결과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	감사관
5호	5-2	감사(불시감사계획 업무 개선안)	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 효과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	감사관
5호	5-3	감사(문답서 · 확인서 · 조사결과보고서 등 감사활동 중 생산된 정보,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요구서,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)	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	감사관
5호	5-4	감찰(특정 행위를 한 감찰담당직원 명단)	비노출 감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	감사관
5호	5-5	감독(불시 지도점검계획, 불시 조사단속 계획)	증거인멸 등 지도감독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 ※ 감독.점검 종료 후 공개, 감독 및 지도점검 결과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	전부서

<부산지방우정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 기준>

(2025. 6.)

구분	순번	비공개 대상정보 목록	사유(법령)	소관부서
5호	5-6	감독(불시지도점검 업무 개선안)	향후 지도감독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음	전부서
5호	5-7	시험(다른 응시자의 성적, 석차, 답안지)	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※ 관련호수 : 6호	인력계획과
5호	5-8	시험(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)	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※ 해당 문제은행이 폐기된 후 공개 가능, 문제은행식이 아닌 경우 문제지와 모범답안 공개	인력계획과
5호	5-9	시험(주관식, 논술시험, 면접시험 채점표)	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※ 관련호수 : 6호	인력계획과
5호	5-10	시험(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 도장날인 부분)	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※ 청구자 본인의 답안지인 경우도 도장날인은 비공개	인력계획과
5호	5-11	시험(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)	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	인력계획과
5호	5-12	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(예산확정 전 예산안, 예산타당성 심사자료)	예산 확정 이전에 공개 시 예산 타당성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	회계정보과
5호	5-13	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(사업계획서, 사업검토서)	사업이 발주 또는 개시 전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※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	전부서
5호	5-14	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(연구용역 중간보고)	용역 완료 전에 공개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음 ※ 연구용역 완료 후 공개	전부서
5호	5-15	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(위원회 회의록, 녹음파일)	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로서 공개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	전부서

<부산지방우정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 기준>

(2025. 6.)

구분	순번	비공개 대상정보 목록	사유(법령)	소관부서
5호	5-16	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(심사위원 후보자 명단)	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,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※ 심사위원 확정 전까지 비공개	전부서
5호	5-17	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(공식발표 전 위원회 의결서)	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하지 못한 의결서 공개로 인해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음 ※ 공식발표 이후 공개	전부서
5호	5-18	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(비공식, 미확정 유관기관 협의내용)	각 기관의 의견이 공식적이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·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,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	전부서
5호	5-19	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(법령개정안 검토의견)	법률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·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	전부서
5호	5-20	의사결정과정(단체교섭에 관한 정보)	단체교섭 진행 과정에 지장을 주고 공정한 교섭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	운영지원과
5호	5-21	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(자체 조직진단·직무분석·총액인건비제 등)	조직관리의 내부 검토·협의·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	인력계획과
5호	5-22	입찰계약(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, 입찰참가 첨부서류)	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※ 관련호수 : 7호	전부서
5호	5-23	입찰계약(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, 계약내역 사양서)	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※ 입찰 종료 후 공개	전부서
5호	5-24	입찰계약(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)	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해당업체의 영업·경영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※ 관련호수 : 7호	전부서
5호	5-25	입찰계약(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점수)	낙찰되지 않은 업체의 평가점수가 경영·영업상의 비밀은 아니나, 공개의 실익이 없음 ※ 관련호수 : 7호	전부서
5호	5-26	입찰계약(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)	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,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고, 경비의 불합리한 증대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	전부서

<부산지방우정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 기준>

(2025. 6.)

구분	순번	비공개 대상정보 목록	사유(법령)	소관부서
5호	5-27	인사관리(채용 계획에 따른 임용 후보자 명단)	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음 ※ 관련호수 : 6호	인력계획과
5호	5-28	인사관리(공무원 근무성적평정결과, 승진후보자 명부 등)	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	인력계획과
5호	5-29	인사관리(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, 소청서, 변명서, 조사보고서, 심사조서, 입증자료)	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	인력계획과
5호	5-30	인사관리(근무성적평가, 승진심사, 징계, 공적심의 등 각종 인사위원회 회의록)	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	인력계획과
5호	5-31	자금운용계획, 운용 관련 검토서, 운용 내역, 성과분석, 예탁금관리업무 사항, 자금잔류한도액 및 자과초금 운송 사항 등	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※ 관련호수 : 7호, 8호	예금영업과 보험영업과 회계정보과
6호		**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·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**		
6호	6-1	공무원(휴대전화번호, 자택주소, 개인 이메일 주소)	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(업무상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, 직위, 담당업무 등은 공개) ※ 관련 호수: 1호(개인정보 보호법)	전부서
6호	6-2	공무원(주민등록번호, 신용카드번호, 통장계좌번호)	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※ 관련 호수: 1호(개인정보 보호법)	전부서
6호	6-3	공무원(가족관계,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)	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	전부서
6호	6-4	공무원(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)	공개 시 개인의 명예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	전부서
6호	6-5	공무원(사상·양심·종교에 관한 정보, 개인에 대한 평가 기록)	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,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※ 관련 호수: 1호(개인정보 보호법)	전부서

<부산지방우정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 기준>

(2025. 6.)

구분	순번	비공개 대상정보 목록	사유(법령)	소관부서
6호	6-6	공무원(인사교류신청, 채용후보자명부, 교육훈련관리, 징계심의·의결·결정통지, 신원조사, 퇴직사실확인·인사기록카드)	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・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・신용・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※ 단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	전부서
6호	6-7	공무원(범죄사실기록, 납세내역, 재산 및 채무현황, 급여 및 수당내역,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, 건강검진 및 의료 기록)	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, 명예훼손,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(단, 공무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면 공개 가능) ※ 관련 호수: 1호(개인정보 보호법)	전부서
6호	6-8	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(휴대전화번호, 자택주소, 주민등록번호, 신용카드번호, 통장계좌번호, 개인 이메일 주소) * 공무직 근로자: 상시적, 지속적 업무에 근무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또는 채용된 자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 신분 * 기간제 근로자: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	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 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※ 관련 호수: 1호(개인정보 보호법)	전부서
6호	6-9	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(가족관계) * 공무직 근로자: 상시적, 지속적 업무에 근무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또는 채용된 자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 신분 * 기간제 근로자: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	공개될 경우 개인 및 개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 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	전부서
6호	6-10	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(학력, 재산, 채무현황, 급여, 수당내역,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) * 공무직 근로자: 상시적, 지속적 업무에 근무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또는 채용된 자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 신분 * 기간제 근로자: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	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	전부서
6호	6-11	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(범죄사실기록) * 공무직 근로자: 상시적, 지속적 업무에 근무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또는 채용된 자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 신분 * 기간제 근로자: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	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	전부서

<부산지방우정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 기준>

(2025. 6.)

구분	순번	비공개 대상정보 목록	사유(법령)	소관부서
6호	6-12	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(납세내역,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) * 공무직 근로자: 상시적, 지속적 업무에 근무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또는 채용된 자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 신분 * 기간제 근로자: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	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※ 관련 호수: 1호(개인정보 보호법)	전부서
6호	6-13	일반인(성명, 휴대전화번호, 자택주소, 주민등록번호, 신용카드번호, 통장계좌번호, 개인 이메일 주소, 보험증서번호 등)	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 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※ 관련 호수: 1호(개인정보 보호법)	전부서
6호	6-14	일반인(학력 및 경력, 자격증 소지 여부, 재산 및 채무현황, 급여 및 수당내역, 범죄사실기록, 납세내역,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, 종교 등)	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※ 관련 호수: 1호(개인정보 보호법)	전부서
6호	6-15	일반인(신고자・제보자 음성파일 및 신상정보)	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※ 관련 호수: 1호(개인정보 보호법)	전부서
6호	6-16	일반인(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)	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※ 진정인(본인)에 대한 조사내용에 한해서는 일부 공개 가능	전부서
7호		**법인 · 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의 경영상 ·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**		
7호	7-1	단체기업, 위탁업체, 개인 등(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)	공개할 경우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	전부서
7호	7-2	단체기업, 위탁업체, 개인 등(총사업비, 자금계획, 입찰자 신용조회결과)	경영・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	전부서
7호	7-3	단체기업, 위탁업체, 개인 등(공사도급계약서)	시행사와 시공사가 각자의 자금상황, 시공능력, 영업노하우 등을 기준으로 협의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	전부서
7호	7-4	단체기업, 위탁업체, 개인 등(핵심산업기술, 내부 자금, 경영방침·신용· 경리·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,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,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,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의 업체 정보, 기술평가 결과 등)	공개할 경우 해당 단체, 기업, 업체, 개인의 경영・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※ 법인 및 업체명, 소재지, 전화번호, 대표자 성명 등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	전부서

<부산지방우정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 기준>

(2025. 6.)

구분	순번	비공개 대상정보 목록	사유(법령)	소관부서
7호	7-5	법인, 단체의 매출액, 부가가치세액 및 환급액	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	전부서
7호	7-6	우체국 계약소포 계약요금제도 세부 운영사항, 영업전략, 영업계획, 계약업체 제휴사항 및 세부정보	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	우편영업과
7호	7-7	수탁판매 수수료 및 판매실적 현황, 알뜰폰 관련 계약사항	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※ 국가계약법에 의한 공개사항은 제외	우편영업과
7호	7-8	우표류 제작을 위한 고해상도 원본파일	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	우편영업과
7호	7-9	우편업무 관련 연구개발 성과물 등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	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	우편영업과
7호	7-10	보험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	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	보험영업과
7호	7-11	고객관계관리시스템(CRM)에 관한 사항으로 고객분석내용, 정보현행화, 시스템운영, 우수고객관리, 마케팅 운영관리 등	공개할 경우 해당 단체, 기업, 개인의 경영·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※ 관련호수 : 5호	예금영업과
8호		**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**		
8호	8-1	청사시설 건립·재배치 계획, 우정국사 증·개축 및 개·폐 계획 (토지 및 건축물 매수 및 매도계획, 임대국사 개발, 도시 계획 변경 협의,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)	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※ 해당 계획이 공표되었거나 그 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님	우정계획과
8호	8-2	국유재산 관리 세부계획	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※ 해당 계획이 공표되었거나 그 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님	우정계획과

※ 세부 기준에 나열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개별 검토에 따라 비공개 여부 결정